

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관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, 관세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관세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행정기관의 장 등"이라 함은 <u>영 제214조제1항 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지역의 관리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관세법</u>」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</u>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규칙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「<u>관세법 시행령</u>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-- <u>각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(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)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의 장·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말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	<p>수정</p>
<p>제3조(이 고시의 해석 및 적용) ①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<u>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</u>, <u>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</u>, <u>보세건설장관리에관한고시</u>, <u>보세전시장운영에관한고시</u>, <u>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</u>, <u>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</u>, <u>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</u> 기타 <u>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관리에관한고시</u>·<u>훈령의</u>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이 고시의 해석 및 적용) ①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2. 「<u>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3. 「<u>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</u>」 4. 「<u>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5. 「<u>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(열거된 사항은 ‘호’로 사용)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신설> 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종합보세구역의 지정) ① <u>종합보세구역은 직권 또는 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<u>요청하고자</u> 하는 자는 종합보세구역 <u>지정(변경)요청서(별지 제1호 서식)에</u>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</p> <p>1. ~ 3 (생략)</p>	<p>6. 「<u>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</u>」</p> <p>7. 「<u>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변경) ① <u>관세청장은 「관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 또는 지정요청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요청 또는 변경하고자</u> ---- ----- <u>지정 요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또는 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(별지 제1호의2서식)에</u> ----- . <u>다만,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조문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와 변경 요청서 서식 구분</p> <p>○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4. 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·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제6조의 규정에 <u>의한</u> 기준을 초과함을 <u>증명하는 자료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 지정(변경)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업체가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중지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대하여 직권 또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의 <u>요청에 의하여</u> 해당 지역</p>	<p>4.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<u>증명하는 자료(변경 요청 시에는 제출 생략)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(종합보세구역 변경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) 이내에 지정(변경)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요청이 있을 경우</u>-----</p>	<p>시 첨부서류 일부 생략</p> <p>○ 변경 요청 시 처리 기한 단축(3개월→1개월)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을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제외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종합보세구역의 지정건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지정건의를 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·수익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) 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직권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<u>행정기관의 장등</u>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요청한 지역에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하였거나 입주할 업체들의 외국인투자금액·수출금액 또는 외국물품 반입물량이 다음 <u>각호의 1에</u>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.</p> <p>제5조(종합보세구역의 지정건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) ① ----- ----- ----- <u>행정기관의 장 등</u> ----- <u>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다만,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자가 개별업체로서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의2(종합보세구역의 예정지역 지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<u>만료되기 전에</u>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214조의2 규정에 <u>의하여</u>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</p>	<p><u>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상 “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물량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여 적용한다.</u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의2(종합보세구역의 예정지역 지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만료되기 전에</u>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</p>	<p>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정 요건 간소화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<u>의한</u> 종합보세구역 지정 여부 <u>결정시</u>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지 <u>아니하기로</u>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7조(설치·운영신고)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설치·운영(변경) 신고서(<u>별지 제2호 서식</u>)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한</u> 설치·운영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설치·운영신고를 한 자가 법 제175조 각호의 <u>1</u>에 <u>해당하는지</u>의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·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결정 시</u> ----- ----- <u>않기로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설치·운영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 (<u>별지 제2호서식</u>)에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어느 하</u> ----- <u>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</u>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운영신고를 한 자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·운영신고필증(별지 제3호 서식)을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세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관세청장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 받은 업체가 종합보세사업장 설치·운영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<u>규정에 불구하고</u>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설치·<u>운영</u>변경신고 등) ① 운영인이 종합보세기능 중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설치·운영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폐업신고 등) ① 운영인이 종합보</p>	<p>----- ----- (별지 제3호서식) 을 -----.</p> <p>③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설치·<u>운영</u> 변경신고 등)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(별지 제2호서식)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폐업신고 등) ① -----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(법인인 경우에는 청산법인 또는 <u>합병후</u>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)은 세관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(<u>별지 제4호 서식</u>)하여야 하며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대하여 재고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설비의 유지의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설치·운영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한 때의 설비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<u>3월이내</u>에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합병 후</u> -----</p> <p>----- (<u>별지 제4호서식</u>)하</p> <p><u>여야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 <u>따라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10조(설비의 유지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3개월 이내</u>에 -----.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③ 세관장은 설치·운영신고일부터 <u>3월 이내</u>에 운영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설비를 구비하도록 명령하거나 물품의 반입정지 또는 기능수행중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제3호의 시설 및 장비의 구비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위험물취급허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빙서류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설치·운영기간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·운영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</u> <u>설영기간 만료 30일전까지</u> 제8조의 규정에 의한 <u>설치·운영변경신고에 의하여</u> <u>설치·운영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(반출입신고) ① 종합보세사업장에</p>	<p>① ----- <u>3개월 이내</u>에 ----- <u>따라</u> -----</p> <p>제11조(설치·운영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</u> ----- <u>30일 전까지</u> ----- <u>따라 설치·운영기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3조(반출입신고) ①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(별지 제5호 서식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 또는 보세운송되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House B/L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며, 세관화물정보시스템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4조(반입물품 확인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「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」 및 「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」에 따라 자체 통고처분 및 조사 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거나 적하목록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에</p>	<p>----- ----- (별지 제5호서식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반입물품 확인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자체조사 -----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단서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③ 소방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위험물 장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화물 반입시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위험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보세 화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출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15조(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) 보세창고·보세공장 및 보세판매장의 기능을</p>	<p>----- . 다만, 「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----- 따라 -----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)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반입확인의 신청 및 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과 정정 기타 이와 관련한 절차는 <u>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</u>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16조(반출명령) 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해당 물품을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즉시 반출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반출명령을 받은 해당 물품의 운송인 또는 운영인은 자기 책임하에 세관장이 지정한 <u>기간내에</u> 이를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출하</p>	<p>----- ----- ----- <u>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</u> ----- -----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<u>(이하 “환급고시”라 한다)의</u> -----.</p> <p>제16조(반출명령) ----- 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간 내에</u> ----- -----</p>	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 정비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7조(견품의 반출입) 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사용(내국물품과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제조·가공한 물품을 수출상당·전시 기타의 사유로 전시장 등 종합보세사업장 외의 장소에 <u>견품으로</u>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<u>견품반출허가(신청)서(별지 제6호 서식)</u>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 견품반출허가</u>를 하는 경우에는 견품의 수량을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(예 : 동일 품목·규격별로 1개 또는 1조)으로 제한하여야 하며, <u>견품채취로</u> 인하여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물품의 변질·손상·가치감소 등으로 관세채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</p>	<p>----- ----.</p> <p>제17조(<u>견본품의</u> 반출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견본품으로</u> ----- ----- <u>견본품 반출 허가</u> ----- <u>(신청)서(별지 제6호서식)</u>를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따라 견</u> <u>본품 반출 허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견본품 채취로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<u>견본품반출허가</u>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 견본품반출허가</u>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 또는 제조·가공된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고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<u>견본품반출허가서</u> 사본을 첨부하여 <u>견본품재반입신고서(별지 제7호 서식)</u>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출상담의 지속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<u>견본품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</u> 세관장에게 <u>견본품반출기간 연장신청서(별지 제8호 서식)</u>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----- <u>견본품 반출 허가</u>를 -----.</p> <p>③ ----- <u>따라 견본품 반출 허가</u>를 -----</p> <p>----- <u>견본품 반출 허가서</u> -----</p> <p>----- <u>견본품 재반입 신고서(별지 제7호서식)</u>를 -----</p> <p>----- <u>견본품 반출기간을</u> -----</p> <p>----- <u>견본품 반출기간 연장 신청서(별지 제8호서식)</u>를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<u>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견본품 반출입 내역을 정정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견본품 반출 정정·취하 승인 신청서(별지 제8호의2서식)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품 반출입 내역을 정정 또는 취하 시 관련 서식 및 절차 마련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④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<u>건품반출허가</u>를 받은 물품이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반출·반입될 때에는 <u>건품반출허가사항</u>을 확인하고, <u>건품반출입사항</u>을 <u>건품반출입대장(별지 제9호 서식)에</u>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한</u> <u>건품반출허가</u>를 받아 반출하거나 재반입되는 물품의 <u>반출입신고</u>는 제1항의 <u>건품반출허가서</u> 및 제3항의 <u>건품재반입신고서</u>로 같음하고, <u>별도의 보세운송절차</u>를 요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⑥ 종합보세사업장과 전시장 등 <u>건품반출장소</u>가 서로 다른 세관의 <u>관할구역내</u>에 있는 경우 세관장은 <u>건품반출장소</u> 관할세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18조(B/L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)</p>	<p>⑤ ----- ----- <u>따라</u> <u>건본품 반출 허가</u>를 ----- ----- ----- <u>건본품 반출 허가사항</u>을 ----- <u>건본품 반출입 사항을</u> <u>건본품 반출입 대장(별지 제9호서식)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⑥ ----- <u>따라</u> <u>건본품 반출 허가</u>를 ----- -- <u>반출입 신고 및 보세운송 절차는</u> <u>건본품 반출 허가서</u> 및 <u>건본품 재반입 신고서</u>로 같음한다.</p> <p>⑦ ----- <u>건본품 반출 장소가</u> ----- <u>관할구역 내</u>에 ----- <u>건본품 반출 장소</u> ----- -----.</p> <p>제18조(B/L제시 인도물품의 반출승인)</p>	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① B/L제시 인도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<u>화물관리공무원에게</u> B/L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<u>의하여</u> B/L을 제시받은 <u>화물관리공무원</u>은 B/L제시 인도대상 물품 여부를 확인하고, 세관화물정보 시스템에 반출승인사항을 등록한 후 승인번호를 B/L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9조(보수작업) ①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수작업신고서(<u>별지 제10호 서식</u>)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보수작업</u>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<u>보수작업물품임을</u> 표시하여 사용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</p>	<p>① ----- ----- <u>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따라</u> ----- <u>화물관리 세관공무원</u>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보수작업) ① ----- ----- ----- (<u>별지 제10호서식</u>)를 ----- ----- <u>보수작업</u> <u>후</u> ----- ----- <u>보수작업 물품임을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조문 변경 내용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대한 보수작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하며, HS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단순한 조립작업(간단한 <u>셋팅</u>,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)</p> <p>5. <u>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</u>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물품의 하자 보수작업</p> <p>③ 보수작업은 <u>종합보세사업장내의</u>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감시공무원으로</u> 하여금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보수작업 신고인이 보수작업을 완</p>	<p>-----.</p> <p>② ----- 따라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세팅</u>, ----- -----</p> <p>5. 「<u>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<u>종합보세사업장 내의</u> ----- ----- 범위 <u>내에서</u> ----- ----- <u>화물관리</u> <u>세관공무원으로</u>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고시 명 정비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료한 때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(별지 제11호 서식)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의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 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 완료보고를 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⑥ <u>화물관리공무원</u>은 보수작업내용이 포장수량의 분할 또는 합병사항인 경우에는 보수작업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는 내국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외국물품은 <u>수입통관후</u>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⑧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<u>동일품목</u>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수작업을 반복</p>	<p>----- (<u>별지 제11호서식</u>)를 ----- -----.</p> <p>⑤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<u>화물관리 세관공무원</u>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<u>수입통관 후</u> -----.</p> <p>⑧ ----- <u>동일 품목</u> -----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단서 규정의 포괄보수작업신고 및 완료보고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.</p> <p>제20조(장외 보수작업) ① 종합보세사업장 외에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<u>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보수작업신고서(별지 제10호 서식)를</u>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1조(해체·절단 등의 작업)</p> <p>① 법 제159조제5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해체·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고철에 한한다.</p> <p>② 수입고철의 해체·절단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<u>해체·절단작업허가(신청)서(별지 제12호 서식)를</u> 세관장</p>	<p>----- ----- 「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21조제2항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0조(장외 보수작업) ① ----- ----- ----- <u>3개월의</u> ----- (별지 제10호서식)를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해체·절단 등의 작업)</p> <p>①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해체·절단작업 허가</u> ----- (신청)서 (별지 제12호서식)를 -----</p>	<p>○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해체·절단작업의 <u>완료보고서</u>에는 <u>작업개시전, 작업중, 작업종료</u> 상태를 각각 사진으로 촬영하여 <u>작업완료보고서</u>에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세관장은 작업을 개시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<u>화물담당공무원으로</u> 하여금 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22조(반입물품의 폐기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한</u>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<u>폐기승인(신청)서(별지 제13호 서식)</u>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<u>의한</u> 폐기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장소와 폐기방법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세관화</p>	<p>-----.</p> <p>③ ----- <u>완료보고서</u>에는 <u>작업개시 전, 작업 중,</u> ----- ----- <u>작업완료 보고서(별지 제12호의2서식)</u>에 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</u> ----- -----.</p> <p>제22조(반입물품의 폐기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폐기 승인(신청)서(별지 제13호서식)</u>를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조문 정비(서식 추가)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(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한한다)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세관장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폐기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해방지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,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폐기승인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·규격·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<u>폐기완료보고서(별지 제14호 서식)</u>에 폐기 전·후 및 잔존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 <p>⑧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<u>폐기완료 보고서(별지 제14호서식)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기처리 할 수 있다.</p> <p>제23조(원료과세 적용물품의 검사)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적용물품 검사신청서(별지 제15호 서식)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세관장은 계속 반복하여 반입되는 동종·동질물품 등으로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제24조(장외 보세작업) ① 운영인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·보세공장 및 기타 해당 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(이하 “장</p>	<p>----- ----- -----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3조제5항의 ----- ----- 폐기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제23조(원료과세) ----- ----- 따라 ----- ----- 원료과세 적용 신청서(별지 제15호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.</p> <p>제24조(장외 보세작업)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원료과세 적용 시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2조의2를 준용하여 검사 규정 완화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외작업장소”라 한다)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6월의 범위 내에서</u> 그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장외작업 신고서(<u>별지 제16호 서식</u>)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(<u>별지 제17호 서식</u>)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의 <u>규정에 불구하고</u> 임가공계약서에 <u>의하여</u>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(장외작업장소, 작업종류, 예상작업기간)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인에게 1년의 <u>기간내에서</u>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 및 제2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신</p>	<p>----- ----- <u>6개월의</u> ----- ----- ----- (<u>별지 제16호서식</u>)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<u>별지 제17호서식</u>)를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기간 내에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따라</u>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고를 하고 제조·가공한 물품과 잉여 물품은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여야 하며, 세관장은 작업신고 단위별로 최종물품의 <u>반입시</u> 일괄하여 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, 장외작업장소에서 수출·수입신고, 양수도 및 폐기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u>반입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5조(석유제품 등의 혼합 제조) ① 석유제품 등(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저장하거나 혼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종합보세사업장에서는 내국물품 또는 외국물품인 석유제품 등을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</u></p>	<p>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국산 석유제품의 반입 및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 등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	<p><u>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은 외국물품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기 전에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수리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의 혼합작업에 사용되는 내국 석유제품 등에 대한 “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”의 발급신청부터 확인서 교부까지 절차는 환급고시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. 이 경우 발급신청 시에는 신청 물품이 혼합된 후 수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 매매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제3항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석유제품 등은 화주 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혼합한</u>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6조(건설신고)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에서 건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, 건설에 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, 공사기간을 기재한 신고서(별지 제18호 서식)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<u>후 전량 수출해야 한다.</u></p> <p>제26조(건설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 (별지 제18호서식)에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<p>제27조(장외 보세건설작업) ① 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조립 등 보세건설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영 제175조 각호의 사항, 작업기간, 작업장소, 장외작업의 사유와 해당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·규격 및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(별지 제15호 서식)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운영인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외 보세건설작업기간의</p>	<p>제27조(장외 보세건설작업) ----- ----- ----- ----- (별지 제15호서식)를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연장 또는 장소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연장 및 장소변경신고서(제17호 서식)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31조(전시신고) 종합보세사업장에서 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전시목적, 전시기간, 전시장소, 전시 또는 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, <u>전시관련행사명</u> 및 규모를 기재한 신고서(별지 제18호 서식)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33조(물품의 보관·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과 수행하는 기능별로 다음 <u>각호의 1에서</u>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물품을 전산설비에 <u>의하여</u> 보관·관리하는 자동화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단속상</p>	<p>----- ----- (별지 제17호서식)을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1조(전시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시행사명</u> ----- (별지 제18호서식) ----- ----- -----</p> <p>제33조(물품의 보관·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</u> --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보세공장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수입통관후</u> 사용하여야 하는 외국물품</p> <p>다. ~ 마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<u>별제201조 제5항</u>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<u>제23호 서식의 장기보관화물 매각승인(요청)서</u>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수입통관 후</u> ----- -----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별제201조제5항</u> ----- ----- <u>장기보관화물 매각 승인(요청)서(별지 제23호서식)</u>로 -----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관련 서식 추가 등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⑦ 그 밖에 매각요청을 받은 장기보관 화물의 처리절차는 「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처리에 관한 고시」를 준용한다.</p> <p>제34조(물품의 회계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종합보세기능 중 그가 수행하는 <u>기능간</u>에 이동하거나 사용·처분하는 때에는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기능별로 물품이동상황, 사용·처분내용 및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<u>의한</u> 장부 또는 전산설비를 이용한 기록은 작성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제35조(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 등)</p> <p>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·반출되는 물</p>	<p>⑦ ----- ----- 「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-----.</p> <p>제34조(물품의 회계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기능 간</u>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5조(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 등)</p> <p>-----</p>	<p>○ 관련 고시명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품의 반입·반출사항, 그 사용 또는 처분사항 및 재고현황 등 물품관리 및 기록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고조사에 대하여는 <u>보세공장운영에 관한고시</u> 제40조 및 「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조문 정비</p>
<p>제36조(멸실·도난·분실물품의 처리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<u>화물관리공무원</u>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관세의 추정·통고처분·고발의뢰·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결과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운영인은 재고대장 등에서 그 수량을 공제 처리한다.</p>	<p>제36조(멸실·도난·분실물품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화물관리세관공무원</u>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반영</p>
<p>제37조(B/L분할 및 합병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B/L분할·합</p>	<p>제37조(B/L분할 및 합병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따라</u> -----</p>	<p>○ 조문 변경 내용 및 알기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특이한 사유로 <u>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</u> 기간 연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선(기)적 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<u>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</u>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<u>재반입하 제한 후</u> 수출신고수리 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.</p> <p>제38조(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) ① 화주는 법 제246조제3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승인(신청)서(<u>별지 제19호 서식</u>)을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한</u> 승인을 받아</p>	<p>----- <u>기간 연장의 신청(별지 제21호서식)</u>이 있는 경우에는 ----- ----- --.</p> <p>⑦ ----- ----- <u>제22호서식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재반입하 제한 후</u> ----- - <u>조치를 해야 한다.</u></p> <p>제38조(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) ①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(별지 제19호서식)을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따라</u>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조문 정비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물품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확인사항을 물품확인대장(별지 제20호 서식)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확인으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<u>입회하에</u>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39조(물품반입정지 및 기능수행정지 등) ① 세관장은 「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18조 및 「<u>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인에게 주의 및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<u>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</u> 다만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의 및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<u>(별지 제20호서식)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입회 하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39조(물품반입정지 및 기능수행정지 등) ① ----- 「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18조 및 「<u>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44조의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다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</u> <u>: 7일 이상 6개월 이하. 다만, 제1항 규</u></p>	<p>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: 7일 이상 6월이하</u></p> <p>3.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유지하여야 할 설비가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: 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를 다시 구비할 때까지. 다만, <u>3월을</u>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과징금의 부과절차는 「<u>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18조를 준용한다.</p> <p>제40조(청문) 관세청장이 법 제204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을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법 제204조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수행중지, 법 제205조에 따른 물품반입정지, 보세건설·보세판매·보세전시의 정지처분,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<u>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</u></p>	<p><u>정에 따라 주의 및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</u></p> <p>3.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3개월을</u>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「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18조를 -----.</p> <p>제40조(청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</u></p>	<p>수정 등 조문 정비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조문 정비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고시」 제19조를 준용한다.</p> <p>제41조(종합보세사업장의 의제) ①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·운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수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·수량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은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의제한다. 다만,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(운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)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종합보세사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잔존 외국물품을 다른 종합보세사업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거나 수입·수출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.</p> <p>제43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</p>	<p>고시」 제19조를 -----.</p> <p>제41조(종합보세사업장의 의제) ----- ----- -----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합병 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3조(재검토기한) -----</p>	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재검토기한 재설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<u>매5년이</u> 되는 시점(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----- ----- 2024년 <u>1월 1일</u> ----- <u>매 5년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부 칙 <고시 제2024-000호(2024. .)></u> <u>이 고시는 2024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----	-----	----

(별지 제6호 서식)

건품반출허가(신청)서				처리기간			
				즉시			
①신청자		③허가번호					
		④허가일자					
		⑤반출기간					
②수입(출)자		⑥반출장소					
		⑦반출목적					
		⑧재반입예정일					
⑨입항일		⑩선 (기) 명					
⑪화물관리번호		⑫선허증권번호					
⑬반입일		⑭장치장소					
⑮장치물품내역				⑯건품반출허가내역			
품명	규격	수량	가격	품명	규격	수량	가격
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 장치물품에 대한 건품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○ 세 관 장 귀하</p>				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다음 조건으로 허가함</p> <p>※ 허가조건 : 건본반출된 물품에 대한 제세 및 제반비용 기타 일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부담할 것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○ 세 관 장 직인</p>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세활용품))

(별지 제6호서식)

건본품 반출 허가(신청)서				처리기간			
				즉시			
①신청자		③허가번호					
		④허가일자					
		⑤반출기간					
②수입(출)자		⑥반출장소					
		⑦반출목적					
		⑧재반입예정일					
⑨입항일		⑩선 (기) 명					
⑪화물관리번호		⑫선허증권번호					
⑬반입일		⑭장치장소					
⑮장치물품내역				⑯건본품 반출 허가내역			
품명	규격	수량	가격	품명	규격	수량	가격
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 장치물품에 대한 건본품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○ 세 관 장 귀하</p>				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다음 조건으로 허가함</p> <p>※ 허가조건 : 건본품 반출된 물품에 대한 제세 및 제반비용 기타 일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부담할 것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○ 세 관 장 직인</p>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세활용품))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관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른 정비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지 제8호 서식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견품반출기간연장승인(신청서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처리기간 1 일</td> </tr> <tr> <td>①신청자</td> <td>③연장승인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④연장승인일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⑤반출허가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②연장사유</td> <td>⑥연장기간</td> <td>1999. . . ~ 1999. . . (일간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⑦장치장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⑧기간연장승인물품내역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품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격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량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격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「종합보세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 견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 </td> <td> 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○○세관장 직인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첨부서류 : 견품반출허가서 1부.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small;"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</p>	견품반출기간연장승인(신청서)		처리기간 1 일	①신청자	③연장승인번호			④연장승인일자			⑤반출허가번호		②연장사유	⑥연장기간	1999. . . ~ 1999. . . (일간)		⑦장치장소		⑧기간연장승인물품내역			품명	규격	수량	가격			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「종합보세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 견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○○세관장 직인</p>	첨부서류 : 견품반출허가서 1부.			<p>(별지 제8호서식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견본품 반출기간 연장 승인(신청서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처리기간 1 일</td> </tr> <tr> <td>①신청자</td> <td>③연장승인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④연장승인일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⑤반출허가번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②연장사유</td> <td>⑥연장기간</td> <td>20 . . . ~ 20 . . . (일간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⑦장치장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⑧기간연장승인물품내역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품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규격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량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격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「종합보세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 </td> <td> 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○○세관장 직인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첨부서류 : 견본품 반출 허가서 1부.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small;"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</p>	견본품 반출기간 연장 승인(신청서)		처리기간 1 일	①신청자	③연장승인번호			④연장승인일자			⑤반출허가번호		②연장사유	⑥연장기간	20 . . . ~ 20 . . . (일간)		⑦장치장소		⑧기간연장승인물품내역			품명	규격	수량	가격			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「종합보세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○○세관장 직인</p>	첨부서류 : 견본품 반출 허가서 1부.		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관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른 정비, 연장 기간 현행화</p>
견품반출기간연장승인(신청서)		처리기간 1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신청자	③연장승인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④연장승인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⑤반출허가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연장사유	⑥연장기간	1999. . . ~ 1999. . . (일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⑦장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기간연장승인물품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품명	규격	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「종합보세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 견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○○세관장 직인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서류 : 견품반출허가서 1부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견본품 반출기간 연장 승인(신청서)		처리기간 1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신청자	③연장승인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④연장승인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⑤반출허가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연장사유	⑥연장기간	20 . . . ~ 20 . . . (일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⑦장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기간연장승인물품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품명	규격	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「종합보세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</p> <p>○○세관장 직인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서류 : 견본품 반출 허가서 1부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-----	-------	-----

<신 설>

(별지 제8호의2서식)

견본품 정정(취하) 신청서			처리기간 1 일
①신청자	③정정(취하)승인번호		
	④정정(취하)승인번호		
	⑤반출허가번호		
②정정/취하 사유	⑥기간	20 ~ 20 (일간)	
	⑦장치장소		
⑧정정/취하 신청 내역			
품 명	규 격	수 량	가 격
<p>「관세법」 제161조와 「종합보세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7조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 위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○ ○ 세 관 장 귀하</p>		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 ○ 세 관 장 직인</p>	
첨부서류 : 견본품 반출 허가서 1부.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견본품 반출입 내역 정정 또는 취하 시 관련 서식 신설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지 제15호 서식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신청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료과세 적용물품 검사신청서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처리기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mixed;">신청인</td> <td>①상호 및 명칭</td> <td colspan="2">②장치장소</td> </tr> <tr> <td>③주소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④성명 (생년월일)</td> <td colspan="2">⑤사업자등록번호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mixed;">신청내역</td> <td>⑥선(기)명</td> <td colspan="2">⑦반입일시</td> </tr> <tr> <td>⑧B/L 번호</td> <td colspan="2">⑨화물관리번호</td> </tr> <tr> <td>⑩HS번호</td> <td>⑪품명</td> <td>⑫규격</td> <td>⑬수량(중량)</td> <td>⑭가격(CIF)</td> <td>⑮검사일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<p>「관세법」 제1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5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3조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 물품 검사신청을 받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 </td> <td colspan="2"> 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 <p>첨부서류 : 1.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(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 2. 송품장 3. 선하증권(B/L) · 항공화물운송장(AWB)사본</p> </td> </tr> </table> <p>* ⑭가격은 실제 결제통화를 기준으로 기재한다. 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</p>	신청번호	원료과세 적용물품 검사신청서	처리기간	1 일	신청인	①상호 및 명칭	②장치장소		③주소			④성명 (생년월일)	⑤사업자등록번호		신청내역	⑥선(기)명	⑦반입일시		⑧B/L 번호	⑨화물관리번호		⑩HS번호	⑪품명	⑫규격	⑬수량(중량)	⑭가격(CIF)	⑮검사일자	<p>「관세법」 제1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5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3조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 물품 검사신청을 받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		<p>첨부서류 : 1.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(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 2. 송품장 3. 선하증권(B/L) · 항공화물운송장(AWB)사본</p>				<p>(별지 제15호서식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신청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료과세 적용 신청서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처리기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 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mixed;">신청인</td> <td>①상호 및 명칭</td> <td colspan="2">②장치장소</td> </tr> <tr> <td>③주소</td> <td colspan="2"></td> </tr> <tr> <td>④성명 (생년월일)</td> <td colspan="2">⑤사업자등록번호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mixed;">신청내역</td> <td>⑥선(기)명</td> <td colspan="2">⑦반입일시</td> </tr> <tr> <td>⑧B/L 번호</td> <td colspan="2">⑨화물관리번호</td> </tr> <tr> <td>⑩HS번호</td> <td>⑪품명</td> <td>⑫규격</td> <td>⑬수량(중량)</td> <td>⑭가격(CIF)</td> <td>⑮검사일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 <p>「관세법」 제1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5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3조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 </td> <td colspan="2"> 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 <p>첨부서류 : 1.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(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 2. 송품장 3. 선하증권(B/L) · 항공화물운송장(AWB)사본</p> </td> </tr> </table> <p>* ⑭가격은 실제 결제통화를 기준으로 기재한다. 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</p>	신청번호	원료과세 적용 신청서	처리기간	1 일	신청인	①상호 및 명칭	②장치장소		③주소			④성명 (생년월일)	⑤사업자등록번호		신청내역	⑥선(기)명	⑦반입일시		⑧B/L 번호	⑨화물관리번호		⑩HS번호	⑪품명	⑫규격	⑬수량(중량)	⑭가격(CIF)	⑮검사일자	<p>「관세법」 제1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5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3조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		<p>첨부서류 : 1.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(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 2. 송품장 3. 선하증권(B/L) · 항공화물운송장(AWB)사본</p>			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원료과세 적용 시 검사 의무 규정 완화</p>
신청번호	원료과세 적용물품 검사신청서	처리기간	1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	①상호 및 명칭	②장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④성명 (생년월일)	⑤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내역	⑥선(기)명	⑦반입일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⑧B/L 번호	⑨화물관리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⑩HS번호	⑪품명	⑫규격	⑬수량(중량)	⑭가격(CIF)	⑮검사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「관세법」 제1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5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3조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 물품 검사신청을 받고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첨부서류 : 1.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(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 2. 송품장 3. 선하증권(B/L) · 항공화물운송장(AWB)사본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번호	원료과세 적용 신청서	처리기간	1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	①상호 및 명칭	②장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④성명 (생년월일)	⑤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내역	⑥선(기)명	⑦반입일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⑧B/L 번호	⑨화물관리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⑩HS번호	⑪품명	⑫규격	⑬수량(중량)	⑭가격(CIF)	⑮검사일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「관세법」 제1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5조 및 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3조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 <p>○○세관장 귀하</p>		<p>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○세관장 직인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첨부서류 : 1.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(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 2. 송품장 3. 선하증권(B/L) · 항공화물운송장(AWB)사본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지 제18호 서식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 colspan="2">신고번호 :</td> <td>처리기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세건설(전시)신고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운영인</td> <td>①상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②주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③성명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④사업자등록번호</td> <td>⑤종합보세사업장의 명칭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신고내보</td> <td>⑥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⑦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⑧공사장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⑨공사기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용전시</td> <td>⑩전시목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⑪전시장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⑫전시기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⑬전시·사용물품의 종류 및 수량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⑭전시관련행사명 및 규모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(전시)신고를 합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 위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O세관장 귀하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첨부서류 : 1. 공사계획서 2. 수입하는 기계류, 설비품 및 공사용장비 명세서(기본계획도, 설비배열도,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한다) 3. 전시관련행사계획서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</td> </tr> </table>	신고번호 :		처리기간	보세건설(전시)신고서		1일	운영인	①상호		②주소		③성명		④사업자등록번호	⑤종합보세사업장의 명칭	신고내보	⑥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		⑦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		⑧공사장소		⑨공사기간		용전시	⑩전시목적		⑪전시장소		⑫전시기간		⑬전시·사용물품의 종류 및 수량		⑭전시관련행사명 및 규모			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(전시)신고를 합니다.			20 년 월 일 위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OO세관장 귀하			첨부서류 : 1. 공사계획서 2. 수입하는 기계류, 설비품 및 공사용장비 명세서(기본계획도, 설비배열도,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한다) 3. 전시관련행사계획서			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	<p>(별지 제18호서식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 colspan="2">신고번호 :</td> <td>처리기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세건설(전시) 신고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운영인</td> <td>①상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②주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③성명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④사업자등록번호</td> <td>⑤종합보세사업장의 명칭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신고내보</td> <td>⑥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⑦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⑧공사장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⑨공사기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용전시</td> <td>⑩전시목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⑪전시장소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⑫전시기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⑬전시·사용물품의 종류 및 수량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⑭전사행사명 및 규모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(전시)신고를 합니다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 년 월 일 위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O세관장 귀하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첨부서류 : 1. 공사계획서 2. 수입하는 기계류, 설비품 및 공사용장비 명세서(기본계획도, 설비배열도,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한다) 3. 전시관련행사계획서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</td> </tr> </table>	신고번호 :		처리기간	보세건설(전시) 신고서		1일	운영인	①상호		②주소		③성명		④사업자등록번호	⑤종합보세사업장의 명칭	신고내보	⑥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		⑦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		⑧공사장소		⑨공사기간		용전시	⑩전시목적		⑪전시장소		⑫전시기간		⑬전시·사용물품의 종류 및 수량		⑭전사행사명 및 규모			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(전시)신고를 합니다.			20 년 월 일 위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OO세관장 귀하			첨부서류 : 1. 공사계획서 2. 수입하는 기계류, 설비품 및 공사용장비 명세서(기본계획도, 설비배열도,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한다) 3. 전시관련행사계획서			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조문 정비</p>
신고번호 :		처리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세건설(전시)신고서		1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인	①상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②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성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④사업자등록번호	⑤종합보세사업장의 명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고내보	⑥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⑦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⑧공사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⑨공사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용전시	⑩전시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⑪전시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⑫전시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⑬전시·사용물품의 종류 및 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⑭전시관련행사명 및 규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(전시)신고를 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 년 월 일 위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OO세관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서류 : 1. 공사계획서 2. 수입하는 기계류, 설비품 및 공사용장비 명세서(기본계획도, 설비배열도,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한다) 3. 전시관련행사계획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고번호 :		처리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세건설(전시) 신고서		1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인	①상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②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성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④사업자등록번호	⑤종합보세사업장의 명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고내보	⑥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⑦사용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⑧공사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⑨공사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용전시	⑩전시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⑪전시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⑫전시기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⑬전시·사용물품의 종류 및 수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⑭전사행사명 및 규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건설(전시)신고를 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 년 월 일 위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OO세관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서류 : 1. 공사계획서 2. 수입하는 기계류, 설비품 및 공사용장비 명세서(기본계획도, 설비배열도,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한다) 3. 전시관련행사계획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